의안번호	2201258
의 뢰 인	문진석의원
회 답 일	2024.7.2
추계번호	24B1517
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5억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265억원(연평균 53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8조)	265	–	–	–	–	265	53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도노선 및 사업구간의 연장 변화로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기본방향)	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야 함 1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여객·물류의 확장과 미래 수요를 반영한 첨단화 추진 2. 철도시설 관리 및 철도차량 운행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철도의 신속한 건설 3. 충청남도, 충청북도 및 경상북도 간 지역화합과 상생발전 4.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발전	의무규정
2	안 제8조 (기본계획의 수립)	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		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1.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수요 예측 2. 철도 건설의 경제성·타당성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의 평가 3. 개략적인 노선 및 차량 기지 등의 배치계획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4. 공사 내용, 공사 기간 및 사업시행자 5. 개략적인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6.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7. 환경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사항 8. 지진 대책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3	안 제10조 (실시계획의 승인 등)	제9조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시행자(이하 “사업시행자”라 한다)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, 사업 구역, 사업 기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.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음(제1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4	안 제12조 (역세권개발사업)	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・광역시장・특별자치시장・도지사・특별자치도지사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3조 (비용부담)	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1항)	의무규정
		제12조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「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2항)	재량규정
6	안 제14조 (부담금 등의 감면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추계현황
1	안 제3조(기본방향) 안 제10조(실시계획의 승인 등) 안 제12조(역세권개발사업) 안 제13조(비용부담)	×	- (미첨부3호) 제정안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비용과 역세권개발사업비용 및 재원부담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현재 건설지역, 시·종점 등이 미확정단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어서, 합리적으로 사업비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2	안 제8조(기본계획의 수립)	○	- (추계)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3	안 제14조(부담금등의 감면)	×	- (미첨부3호) 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·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협력금, 공유수면 점용료·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세입감소가 예상되나, 현재 동 사업지역별로 부과될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의 규모, 감면율 등을 특정하기 곤란하여 세외수입 감소분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❑ 제정안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,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,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고, 중부권의 동서 간 교통접근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

❑ 제정안에 따른 중부권동서횡단철도는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에 추가검토 사업[1]으로 반영되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후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임

○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지역, 시·종착점 등이 미확정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단계로 기본방향(안 제3조)·실시계획의 승인(안 제10조)·역세권개발사업(안 제12조)·비용부담(안 제13조)·안 제14조(부담금등의 감면) 등에 따른 관련 소요비용을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❑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조문 중 현재 추계가 가능한 안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비용을 추산하며, 최근 시행된 유사한 철도건설사업 비용에 준하여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
❑ (안 제8조) 본 추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는 최근 시행된 유사사례 철도건설사업의 연장당 기본계획 평균수립비용을 활용하여 추산함

○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전체 연장당 기본계획수립비용 단가를 곱하여 추산함

○ (총사업연장)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 상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구간의 총연장은 322.4㎞[2]

○ (단가) 기본계획수립비용은 수립시점 비용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2026년 기준 km당 8,210만원으로 계산됨

---

1) * (추가검토 사업)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
2) 참고자료에서 관련 사업개요 확인

[표 2] 유사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구간 (연장,km)	기본계획수립비용 (연도)	기본계획수립비용 (2026년 기준 환산)	연장당 수립비용 (2026년 기준 백만원/km)
강릉~제진 (단선전철)	111.7	11,675 (2019)	14,006	78.7
남부내륙철도 (단선전철)	117.9	8,000 (2020)	9,549	85.5
평균비용(백만원/km)				82.1

○ 이상 추산한 평균 단가를 바탕으로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에 반영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연장(322.4km)에 대한 기본계획수립비용은 264억 7,200만원으로 추산됨

[표 3] 유사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비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구간 (연장, km, A)	기본계획수립단가 (2026년 기준, 백만원, B)	기본계획수립비용 (A×B)
중부권동서횡단철도	322.4	82.1	26,472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 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철도노선 및 사업구간의 연장 변화로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

[표 4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기본계획 수립비용	26,472	-	-	-	-	26,472

주: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 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Ⅳ. 부대의견

❑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값으로,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계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제정안 중 추계하지 않은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따라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이유미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계획(안)

국토교통부 제출자료

❑ 사업개요 (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」 기준)

○ 사업목적 : 중부권 동서연결 단절구간 해소로 교통낙후지역의 접근성 개선 및 동서축 철도망 구축

○ 사업내용 : 서산~울진 322.4km 단선전철

○ 추가검토 사업 (24개 사업 중에 포함)

*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

노 선 명	사업구간	사업내용	연장(km)
인천2호선 안양 연장	인천대공원~안양	복선전철	21.8
서울6호선 구리남양주 연장	신내~남양주	복선전철	-
서울2호선 청라 연장	홍대입구(까치산)~청라1)	복선전철	-
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	방화역~검단~김포2)	복선전철	-
경강선 연장	삼동~안성	단선전철	59.4
별내선 의정부 연장	별가람~탑석	복선전철	8.7
조리금촌선(통일로선)	삼송~금촌	복선전철	17.8
교외선	의정부~능곡	단선전철	28.9
인천신항선	월곶~인천신항	단선철도	12.5
경원선	연천~월정리	단선전철화	29.3
전주김천선	전주~김천3)	단선전철	101.1
점촌안동선	점촌~신도청~안동	단선전철	47.9
보령선	보령~조치원	단선전철	82.1
내포태안선	내포~태안	단선전철	57.6
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선	동익산 신호장~완주산단	단선철도	11.4
중부권 동서횡단선	서산~울진	단선전철	322.4
창원산업선	창녕 대합산단~창원	단선전철	46.3
구미산단선	사곡~구미산단	단선철도	8.3
대산항선	석문산단~대산항	단선철도	18.6
의성영덕선	의성~영덕	단선전철	71.9
원주춘천선	원주~춘천	단선전철	50.7
마산신항선	마산~마산신항	단선전철	13.3
태백영동선	제천~삼척	복선전철	125.4
군산목포선	군산~목포	복선전철	121.0
계			1,256.4

주 1. 대장홍대 사업이 확정된 후 관계 지자체 및 민간사업자 등 협의를 거쳐 최적대안으로 추진
2.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
3.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,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 추진

자료: 국토교통부, 「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: 2021~2030년」, 2021.6.

❑ 추진현황

○ ‘16. 6 :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일부구간*만 반영

– * 아산·석문산단~합덕간 단선철도(L=36.5km)

○ ‘16. 3 :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협의체 구성(충남·북 경북 12개 시·군)

– * 12개 시·군 협의체(충남 천안·서산·당진·예산·아산, 충북 청주·괴산, 경북 문경·예천·영주·봉화·울진)

○ ‘16.12~ : 12개 시·군 공동 연구용역 시행(교통연구원, ’17.10월 중지)

○ ‘17.4~7 : ‘지역공약사업’ 및 ‘국정운영 5개년 계획’ 반영

– * 서산~천안~청주~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

○ ‘17.12 :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(3억원) ’18년 예산에 포함

○ ‘18. 5~‘19. 4 :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시행

○ `21. 7 :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(추가검토사업)

❑ 노선도